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 공고

(2021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과 창업아이디어 기술구현 및 기존 제품에 대한 기술개선, 기술융합 R&D를 지원하는 ‘기술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서울기술연구원장

□ 지원유형별 개요

항 목	기술컨설팅	기술연구개발
지원분야	- 기술 애로사항 컨설팅 - R&D 기획 컨설팅	- 창업아이디어 기술구현 R&D (TRL 3단계 이상 권장) - 기존 제품, 서비스(TRL 6단계 이상)에 대한 기술개선, 기술융합 R&D
지원기업 요건	캠퍼스타운 기업 (캠퍼스타운 프로그램 참여 기업)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서울소재)
지원내용	-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지원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컨설팅비 지원)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제품·시제품 제작, 안정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지원비용	1.82억원/건당 최대 3백만원 (캠퍼스타운 전문가에게 지급)	8억원/건당 최대 1억원
수행기간	3개월 이내	1년 이내

필독 사항

- 애로기술 “기술컨설팅” 및 아이디어 기술구현, 기술개선/기술융합 “기술연구개발지원”
- 기업의 기술수요에 대해 전문가 매칭 후, 기술컨설팅 또는 기술연구개발지원
 - 기술연구개발은 매칭된 기업, 전문가가 과제계획서 작성,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평가
 - 기술연구개발은 기업(협력), 전문가(협력), 서울기술연구원(주관) 컨소시엄 구성, 연구수행
-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연구개발 사업비 차등지급
- 과제명 및 과제내용은 개발내용과 기대효과를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함

※ 서울기술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핵심기술보유 전문가를 매칭하여 캠퍼스타운 기업의 기술 애로해결 컨설팅 및 창업아이디어, 기술개선/융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 전문가: 캠퍼스타운 소속 대학(2021년 기준 36개 대학)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9.82억원

- 기술컨설팅: 1.82억원, 건당 최대 3백만원/3개월 이내
 - ※ 기술컨설팅비(최대3백만원)는 캠퍼스타운에서 전문가에게 지급
- 기술연구개발: 8억원, 건당 최대 1억원/1년 이내
 - ※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개별과제의 사업기간 및 시지원금 조정 가능함

▣ 지원대상

○ 기술컨설팅

- 캠퍼스타운 기업
 - ※ 캠퍼스타운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캠퍼스타운 사무국 확인 필수)
 - ※ 기업당 3회까지 신청가능(중복기술 불가), R&D기획 컨설팅은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기술연구개발

-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서울 소재)

※ '20년 기술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단, 종료 후 지원 가능)

※ 전문가 매칭 후 과제 선정 시 기업, 전문가, 서울기술연구원이 컨소시엄으로 연구참여

※ 주관기관: 서울기술연구원, 협력기관: 기업, 전문가

※ 캠퍼스타운사업: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 종합형: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

. 단위형: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활동 지원

- 참여대학(2021년 기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추가 혹은 변경 가능)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고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기술컨설팅

- 기술애로 컨설팅

- R&D기획 컨설팅

○ 기술연구개발

- 창업아이디어 기술구현 R&D(TRL 3단계 이상)

- 기존 제품, 서비스(TRL 6단계 이상)에 대한 기술개선, 기술융합 R&D

▣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 기술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애로 컨설팅
- 기술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대상 R&D기획을 위한 컨설팅
- ※ R&D기획컨설팅은 1회에 한해 신청. 본 사업인 기술매칭 기술연구개발 참여시 R&D기획 컨설팅의 전문가와 참여 필요
- 컨설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은 기업에 소유됨(중단된 경우도 포함)

○ 기술연구개발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제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기술연구개발 최종 결과물은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에서 시제품 제작

▣ 기술소유권 및 기술료

○ 기술소유권

- 기술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과제 컨소시엄내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소유
- 기술실시권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실시권 협약 후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소유

○ 기술료

-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료는 별도 징수하지 않음
- ※ 단 기술연구개발 전 보유한 기술 대가는 기술연구개발 협약 전, 기업과 전문가 간에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3. 신청자격

▣ 기술컨설팅

- 캠퍼스타운 기업

▣ 기술연구개발

-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서울 소재 개인, 법인 사업자)
 -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증 상 캠퍼스타운 입주)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증 상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기업

○ 지원제외 대상

①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② 중복성

- 접수과제의 내용(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참여기관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제작·생산·판매중인 제품·서비스인 경우
- ※ 과제계획서 제출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개별 확인

③ 참여율

- 부문책임자(기업, 전문가)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책임자이어야 함

④ 의무사항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과제(부문) 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⑤ 신용 및 기업 상태

- 참여기관, 참여기관장, 부문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 참여기관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 . 개인의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체납, 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 ㉠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 관련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향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 3년 이하 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라도 참여 허용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술컨설팅

-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연구개발을 위한 R&D 기획 컨설팅 제공
- 기술컨설팅을 수행한 전문가에게 컨설팅비 지원

▣ 기술연구개발

-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 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범용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캠퍼스 기술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민간부담금에 대한 의무 없음

※ 비영리기관 대학은 현물계상

※ 시지원금 비율은 서울기술연구원 5%, 95%는 참여전문가와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이 상호 협의하에 배분. 단 한 쪽이 60%를 초과하지 못함

<(예시) 시지원금 1억원 기준, 사업비 배분>

(단위: 천 원)

구분	시지원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물	현금	
참여전문가	50.000	1)	-	50.000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45.000	-	-	45.000
서울기술연구원	5.000	-	-	5.000
합계	100.000	-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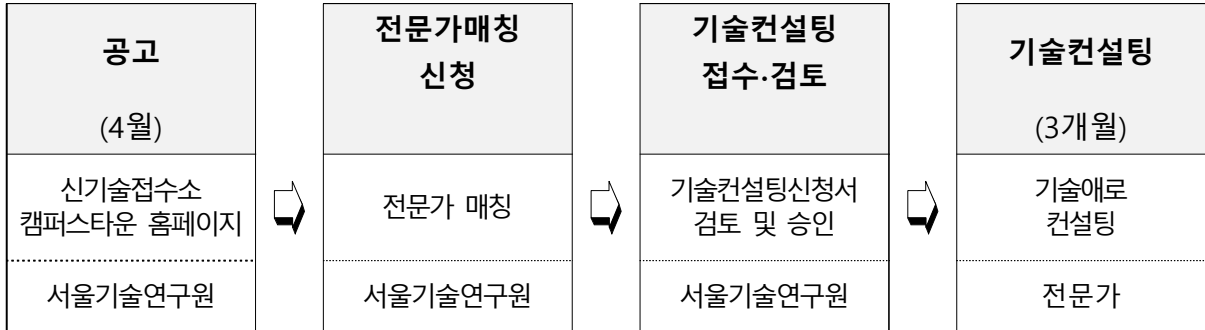
-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컨소시엄(참여전문가,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서울기술연구원)내에서 배분하며 예시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 5%, 참여전문가 50%,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45%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참여전문가 50,000천원(50%),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이 45,000천원(45%), 서울기술연구원이 5,000천원(5%) 배분

1) 비영리기관 대학의 내부인건비는 현물계상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기술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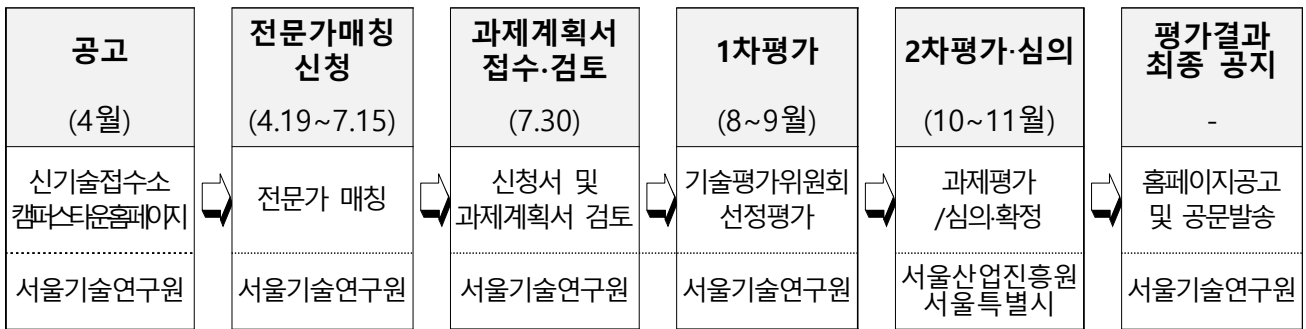
○ 신청절차



- ※ 전문가 매칭이 된 기업에 한해 기술컨설팅 신청 가능
- ※ 전문가 매칭은 1주일 단위로 진행
- ※ 기술애로컨설팅은 사업공고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1개월단위 검토 진행
- ※ R&D기획컨설팅은 기술연구개발 접수 1개월 전까지 상시접수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연구개발

○ 신청절차



- ※ 전문가 매칭이 된 기업에 한해 과제계획서 신청 가능
- ※ 전문가 매칭은 1주일 단위로 진행, 과제계획서 접수 전까지 재매칭 가능. 단 매칭 후 과제계획서 작성 중 기업, 전문가간 상호 합의하에 매칭이 해제된 경우 재매칭 가능.
- ※ 1차 평가는 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발표심사로 진행
- ※ 2차 평가 및 심의는 1차 평가 선정된 과제에 대해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심의회에 참여
- ※ 기술연구개발 과제계획서 접수 후 기업, 전문가 중 한쪽의 참여 포기가 발생 시 사업 참여가 불가
-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1차평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기술성(40)	▪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및 혁신성	20점
	▪ 기술개발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사업성(30)	▪ 목표시장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 사업화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5점
예산 적절성(20)	▪ 예산 계획의 적절성	20점
R&D 수행의지(10)	▪ 기업, 전문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수행의지	10점
합계		100점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그룹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접수 : 2021. 4. 19(월)부터 접수
 - 기술컨설팅: 예산소진시까지 접수
 - 기술연구개발: 7.30 18:00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http://seoul-tech.com>) 또는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https://campustown.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신기술접수소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 진행

◆ **회원가입 방법**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http://www.seoul-tech.com>)에서 **기업회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입력

- 기술매칭 신청 페이지에서 ‘기술컨설팅’과 ‘기술연구개발’ 항목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양식을 기술매칭 신청페이지 혹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완료 확인

- 3단계 완료 후 마이페이지 → 기술매칭 접수내역 → 진행상황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기술컨설팅 신청

구분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전문가 매칭	①	전문가 매칭 신청서 ※ 출력 및 날인(서명)후, PDF 스캔본과 HWP로 제출	HWP 파일 및 PDF 파일	○	
	②	자격요건 확인 리스트	PDF 파일	○	
컨설팅 신청	①	기술컨설팅 신청서 ※ 출력 및 날인(서명)후, PDF 스캔본과 HWP로 제출	HWP 파일 및 PDF 파일	○	
	②	캠퍼스타운 기업 확인서 ※ 출력 및 날인(서명)후, PDF 스캔본과 HWP로 제출	PDF 파일	○	
	③	기타(특허, 기술설계서 등)	PDF 파일		○

- 기술연구개발 신청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전문가 매칭	①	전문가 매칭 신청서 ※ 출력 및 날인(서명)후, PDF 스캔본과 HWP로 제출	HWP 파일 및 PDF 파일	○	
	②	자격요건 확인 리스트	PDF 파일	○	
과제 접수	①	과제계획서 ※ 출력 및 날인(서명)후, PDF 스캔본과 HWP로 제출	HWP 파일 및 PDF 파일	○	
	②	신청 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리스트 ※ 출력 및 날인(서명)후, PDF 스캔본과 HWP로 제출	HWP 파일 PDF 파일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PDF 파일	○	
	④	기업 재무제표 - 전년도 재무제표	PDF 파일	○	
	⑤	NTIS 과제 중복성 확인서 및 업로드 엑셀파일 - NTIS 과제중복성 확인서 및 업로드 엑셀파일	PDF 파일 엑셀 파일	○	
	⑥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확인서	PDF 파일	○	
	⑦	기술성숙도 ※ 창업아이디어: TRL 3단계 증명서 (실험결과, 설계서, 기술사진) 기술개선/융합: TRL 6단계 증명서 (기술/제품 사진, 기술실행사진, 시방서 등)	PDF 파일	○	
	⑧	기타(특허, 논문 등)	PDF 파일		○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 ⑥ 과제접수 후 협약 전까지 기업, 전문가 중 한쪽이 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⑦ 과제선정 후 기업, 전문가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 포기 시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

■ 문의처

- 온라인 :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http://seoul-tech.com>) Q&A
- 담당자 :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
(e-mail: matching@sit.re.kr, T: 02-6910-9803)